

■ 업무내용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시장·군수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徵求), 운영규정 작성 지원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기술자격
<p><b>상근인력 5인</b> -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 한 자</li> <li>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li> <li>3) 법무사 또는 세무사</li> <li>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중개사·행정사</li> <li>- 정부기관·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li> <li>-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li> <li>-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li> </ul> </li> </ol>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 1), 2) 인력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4)의 인력은 2인을 초과할 경우 2인으로 본다.

3.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